

3. 케어플랜 작성

- 개호보험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, 개호지원전문원(케어매니저)과 함께 필요성에 따라 서비스를 조합한 케어플랜을 작성합니다.

【요개호 1 ~ 5로 인정받은 분】

케어플랜은 거택개호지원사업소의 케어매니저에게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. 본인이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.

【요지원 1 · 2로 인정받은 분】

케어플랜은 지역포괄지원센터(21 페이지 참조)에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. 본인이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.

- 요개호(요지원) 인정 구분에 따라 개호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비용의 상한(지급한도기준액 ※ 10 페이지 참조)이 다릅니다.
-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는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에 신청하고 입소한 시설에서 케어플랜을 작성합니다.



4. 서비스 이용

- 케어플랜을 바탕으로 서비스제공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.
- 계약 시에는 서비스 시간, 요금, 내용, 해지처리, 고충처리에 대한 대응 등을 확인합니다.
-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10% 또는 20%(2018년 8월부터 20% 부담자 중 특히 소득이 높은 분의 부담비율은 30%)는 자기부담이 됩니다. 단, 지급한도기준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부분은 전액 자기부담이 됩니다(※서비스 이용 시의 이용자 부담에 대해서는 10 페이지 참조).
- 요개호(요지원) 인정에서 비해당 판정을 받으신 분도, 지역지원사업에서 생활기능의 유지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가까운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상담해 주십시오.

서비스의 이용을 목표로 하지 말고,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기다운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